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하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안 호
764	

발의연월일 : 2011. 11. 16.

발의 의원 : 하용하 의원, 김기석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를 누리는 어르신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장수노인의 정의(안 제2조)

- “장수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 “장수축하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다. 지급액(안 제4조)

- 장수축하금은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한다.

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안 제7조)

- 장수축하금은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현금 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원칙)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첫 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 복지가 증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하용하	하용하	하
김기석	김기석	김기석